

1. 개정이유

자동차관리법 제70조(자동차관리의 특례) 개정사항이 하위법령인 “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”에 미반영되어 있어, 특례사항을 적용함에 있어 혼란을 야기함에 따라 이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자동차관리법 제70조 개정사항인 부품자기인증과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와 이륜자동차번호판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(안 제1조, 제9조 및 제20조)
- 나.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된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자동차의 등록·자기인증·점검·정비·검사·폐차자동차등록번호판”을 “자동차에 대한 등록(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)·자동차자기인증·부품자기인증·점검·정비·검사·폐차·등록번호판(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)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점유자에 대하여 그”를 “점유자에게 자동차”로 한다.

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

제2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자동차의 등록·자기인증·점검·정비·검사·폐차자동차등록번호판</u> 및 봉인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	제1조(목적)	-----	-----
			---	<u>자동차에 대한 등록(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)·자동차자기인증·부품자기인증·점검·정비·검사·폐차·등록번호판(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)</u> ---.
제7조(체약국자동차의 정비·검사 및 폐차) ① (생략)		제7조(체약국자동차의 정비·검사 및 폐차) ①	(현행과 같음)	
②시·도지사는 운행표의 발급을 받은 체약국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<u>점유자에 대하여 그의 폐차 또는 일정한 장소로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.</u>		②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<u>점유자에게 자동차</u> -----
			-----	-----.
제9조(자기인증등의 면제) 외교용등의 자동차, 경호용등의 자동차, 미군등의 사유자동차, 체약국자동차, 대테러용등의 자동차 및 일시수입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무		제9조(자기인증등의 면제)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
를 면제한다. 다만,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경우 제5호 본문에 따른 자동차검사 중 신규검사, 정기검사 및 튜닝검사는 면제하지 않는다.

1.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

2. ~ 4. 삭제

5. (생략)

제20조(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) ①법 제7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(「도로법」에 의한 도로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)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무를 면제한다. 다만,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(생략)

2.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

3. 4. 삭제

5. (생략)

-----.

-----.

1.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

5.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) ①-----

-----.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

5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생략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